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『2027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**

○ 제 품 명 : Search Formula-1 v5.0

○ 발주자(갑) : **부천시청**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(주)와이즈넛
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5,906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 9 월 일

"갑" 부 천 시 청 (인)

"을" ㈜와이즈넛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
○ 제 품 명 : Pass-Ni SSO
○ 발주자(갑) : 부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㈜유비앤티스랩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10,366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"갑" 부 천 시 청 (인)

"을" ㈜유비앤티스랩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

○ 제 품 명 : Jennifer 5

○ 발주자(갑) : 부천시청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㈜싸이웰시스템
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7,341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"갑" 부 천 시 청 (인)

"을" ㈜싸이웰시스템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**

○ 제 품 명 : 통합MMS발송시스템(V5.0)

○ 발주자(갑) : **부천시청**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**㈜아이하트**
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3,576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"갑" **부 천 시 청** (인)

"을" **㈜아이하트**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
○ 제 품 명 : 대량 접속제어시스템(TRACER v2.0)
○ 발주자(갑) : 부천시청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㈜웰컨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5,280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2 일

"갑" 부 천 시 청 (인)

"을" ㈜웰컨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
○ 제 품 명 : Synap Document Viewer 2022
○ 발주자(갑) : **부천시청**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**㈜사이냅소프트**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.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.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.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2,746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"갑" **부 천 시 청** (인)

"을" **㈜사이냅소프트** (인)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

○ 제 품 명 : eDotXPress HTML v1.0

○ 발주자(갑) : 부천시청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㈜에이티소프트
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2,400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일

"갑" 부 천 시 청 (인)

부천시장인

"을" ㈜에이티소프트

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**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사업』**

○ 제 품 명 : webnibbler v7

○ 발주자(갑) : **부천시청**

○ 제조사 또는 공급사(을) : **㈜에이다루트**
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 (12개월)

※ 2027.1.1.일 이후 계약체결 시 협약금액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『2027년 부천시 인터넷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용역』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·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·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·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 협의하는 금액 (2,400,000원, 부가세포함) 이하로 한다.

제4조(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6년 9 월 17일

"갑" **부 천 시 청** (인)

"을" **㈜에이다루트** (인)